

목회자 대상 종교인소득신고 설문조사 결과발표 간담회 자료집

2021.08.23(월) 오후 2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https://bit.ly/교회재정건강성운동>

행사 순서

www.cfan.or.kr

- ☑ 목회현장의 소리 (송파교회 김관표 목사)
- ☑ 설문조사 결과발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김수일 간사)
- ☑ 개선방안 제안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
- ☑ 유관기관 자유토론 (예장통합 前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세무사)

문의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김수일 간사)

02-6591-1391 / cfan05@hanmail.net

 Church Financial Accountability Network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대상 종교인소득 신고 설문조사 결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간사 김수일

제 1 장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목적

본 연구는 2018.1.1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하여 개신교 목회자들의 제도 이행정도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설문조사 설계

- 1) 조사 대상 : 개신교 목회자
- 2) 조사 방법 : 개방형 온라인 설문 (구글 설문지)
- 3) 표본 규모 : 총 134 명 (유효표본) (모집단 8.4 만 추정; 문체부 2018 년 한국의 종교 현황 참고)
- 4) 자료 처리 및 분석 : 수집 된 자료는 Editing -Coding - Punching - Clean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 IBM SPSS Statistics 26 으로 분석함
- 5) 조사 기간 : 2020 년 6 월 15 일 ~ 30 일 (16 일간)
- 6) 주요 조사 내용 : 개신교 목회자의 종교인소득 신고현황, 제도 개선 희망 사항 등
- 7) 조사 기관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3. 연구의 한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표본이 모집단(개신교 종교단체 및 목회자)를 대표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1) 표본의 개수(134 개)가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 2) 표본에 편향(bias)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문조사는 온라인 공개조사를 통해 진행되어 누구나 참여가능 했지만, 설문조사의 홍보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하 단체)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
 - 교회개혁실천연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
 - CBS 교계뉴스 방영 (6/16), 당당뉴스 보도(6/23)¹ 등 언론 보도
 - 단체가 진행한 종교인소득 관련 교육 참가자에게 설문요청 이메일 · 문자메시지 발송
 - 종교인소득 신고 프로그램 P TAX 회원에게 설문요청 이메일 발송
 - 느헤미야교회협의회, 건강한작은교회동역센터, 교회 2.0 목회자운동에게 홍보
 - 층화 추출(stratifying), 군집 추출(clustering) 등 표본 통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¹ <https://tv.naver.com/v/20797284>,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95>,

4. 응답자 특성

1) 거주지역

	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강원, 제주
사례수(명)	134	37	49	11	13	6	14	4
비율(%)	100	27.6	36.6	8.2	9.7	4.5	10.4	3

2) 연령

	계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이상
사례수(명)	134	37	49	11	13
비율(%)	100	27.6	36.6	8.2	9.7

3) 교단

	계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통합)	장로교 (합동)	장로교 (그 외)	침례교	이외 교단
사례수(명)	134	17	10	16	42	29	6	14
비율(%)	100	12.7	7.5	11.9	31.3	21.6	4.5	10.5

4) 소속 교회 목회자 수

	계	1 인	2~3 인	4~5 인	6~10 인	10 인 초과
사례수(명)	134	74	30	12	14	4
비율(%)	100	55.2	22.4	9	10.4	3

5) 소속 교회의 주일 예배 참석 성도 수

	계	100 명 이하	100~ 300 명	300~ 500 명	500~ 1,000 명	1,000 명 초과
사례수(명)	134	96	17	10	8	3
비율(%)	100	71.6	12.7	7.5	6	2.2

6) 직분

	계	담임목사	그 외
사례수(명)	134	109	25
비율(%)	100	81.3	18.7

7) 교회 사례금 규모

	계	1,200 만원 이하	1,200~ 2,000 만원	2,000~ 4,000 만원	4,000~ 6,000 만원	6,000 만원 초과
사례수(명)	134	31	24	66	12	1
비율(%)	100	23.1	17.9	49.3	9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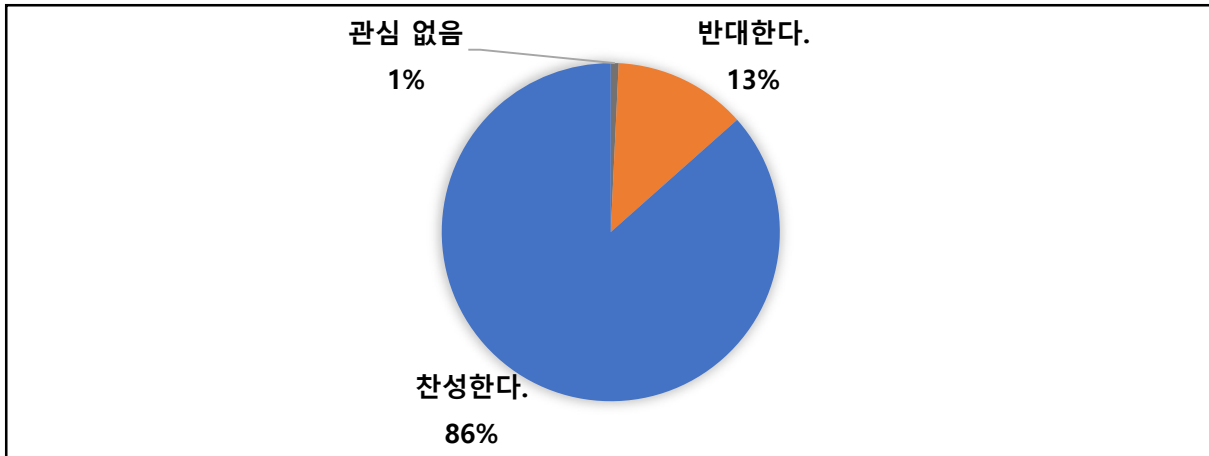
8)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의 존재 여부

	계	없음	있음
사례수(명)	134	91	43
비율(%)	100	67.9	32.1

제 2 장 조사 결과 발표

1.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개신교 목회자 여론

[물음] 종교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찬반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N = 1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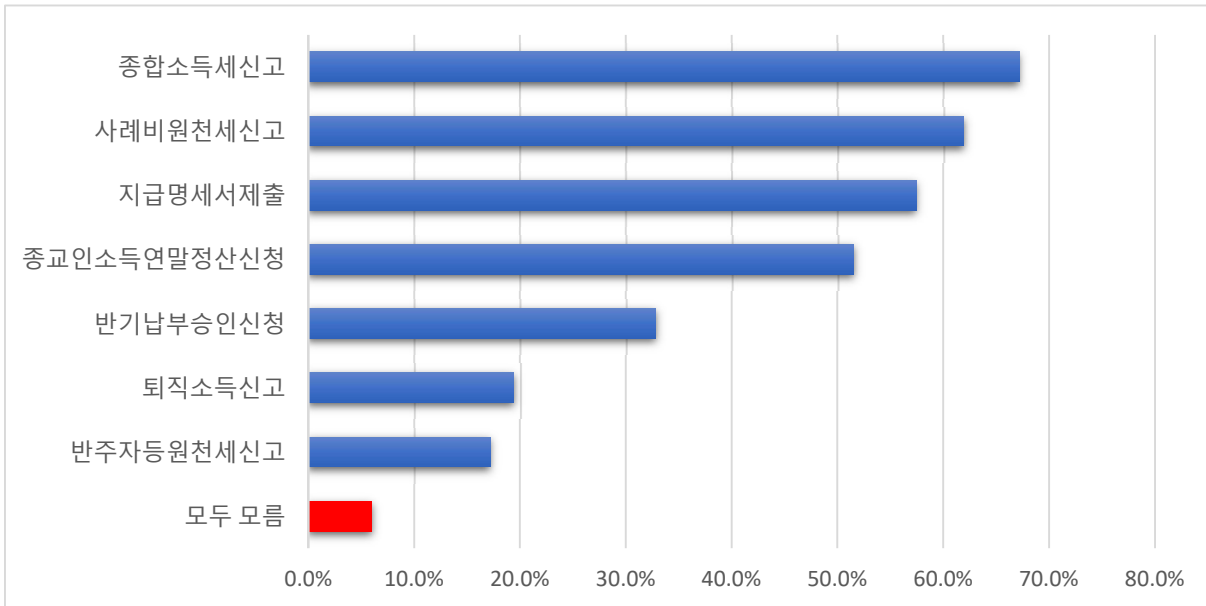


개신교 목회자 134 명을 대상으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해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86%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1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 종교인소득신고 제도 인지 현황

[물음]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 알고 계신 내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N = 134, %)



종교인소득신고 제도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 7 가지에 관해 알고 있는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달라는 질문에, 1 개 이상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94.1%, 모두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5.9% 였다.

종교인소득 신고의 핵심인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비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0% 이상 70% 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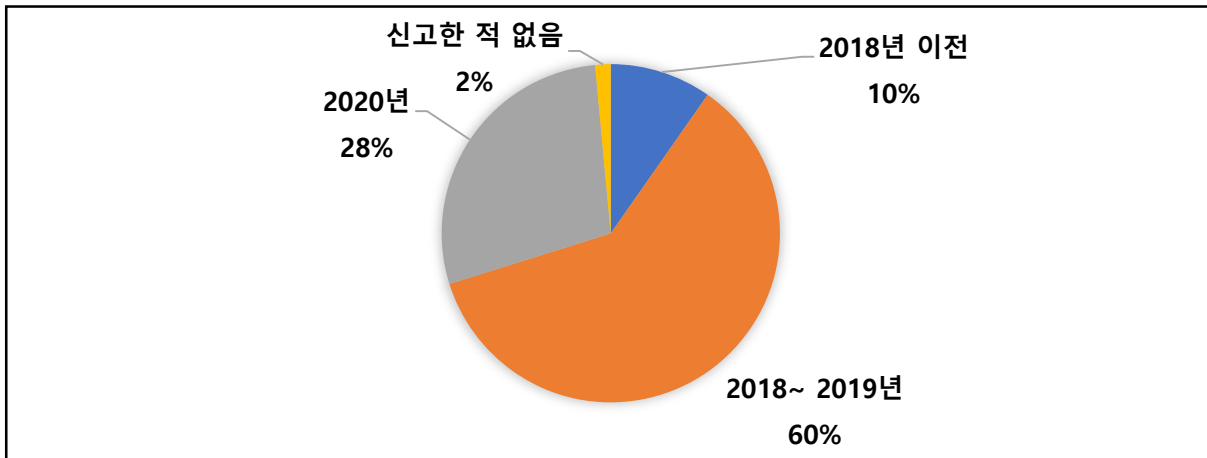
또한, 퇴직소득 신고에 대한 인지도(19.4%)와 반주자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에 대한 인지(17.2%)는 더욱 낮게 나타났다.

3. 종교인소득신고 제도 이행 현황

(1) 신고시작 시기

[물음] 교회에서 소득 신고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N = 1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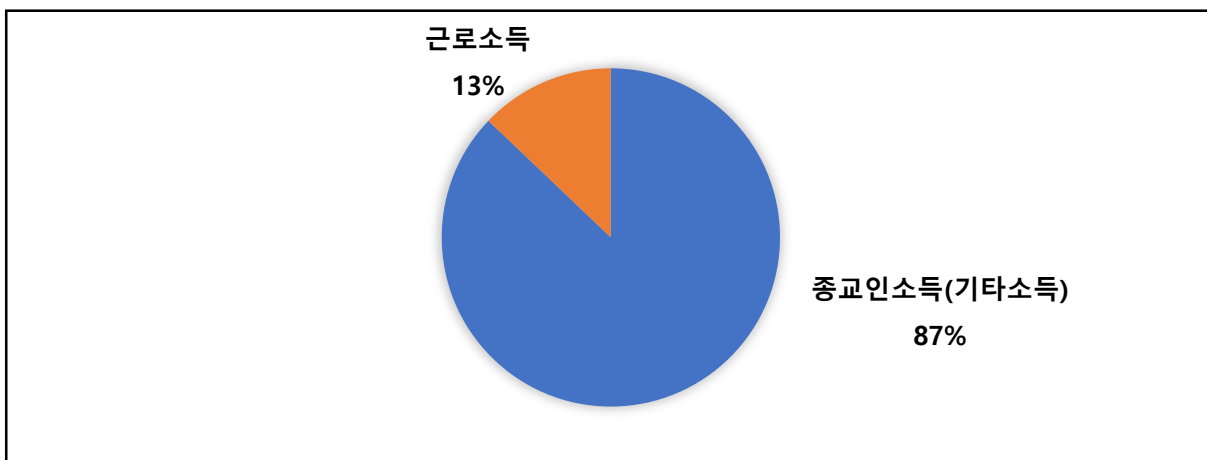
종교인소득 관련 소득세법 시행 이전(2018년 이전)부터 소득세를 신고해오던 교회는 10%였고, 소득세법 개정 이후 2년 내에 소득세 신고를 시작한 교회는 60%였으며, 2020년부터 소득세 신고를 시작한 교회는 28%였다.

응답자 총 134명 중 132명(98%)이 2020년까지 1회 이상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소득세 신고 시, 선택한 소득구분 (근로소득, 기타소득)

[물음] 사례비를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하셨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N = 1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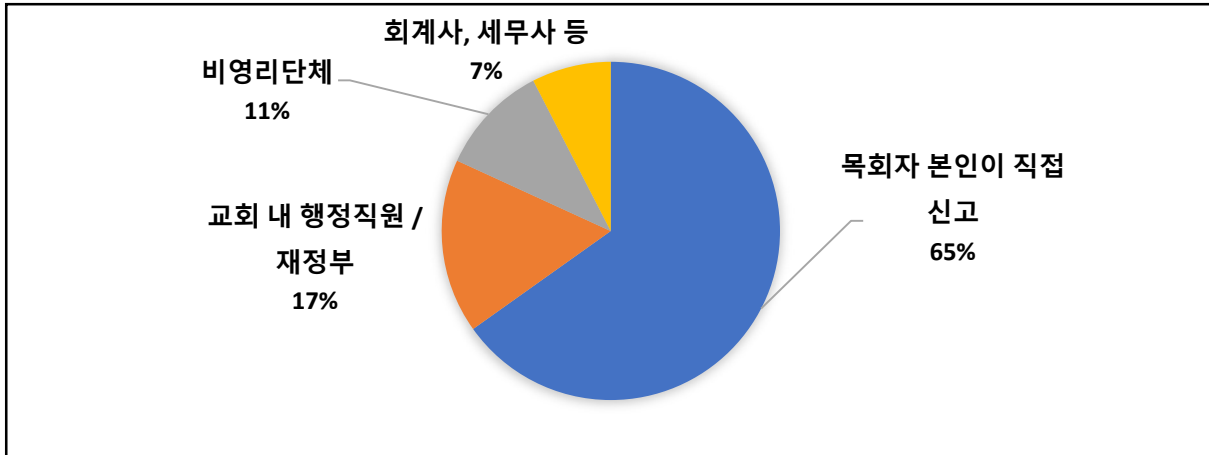


설문 응답자 대부분(87%)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3) 신고 수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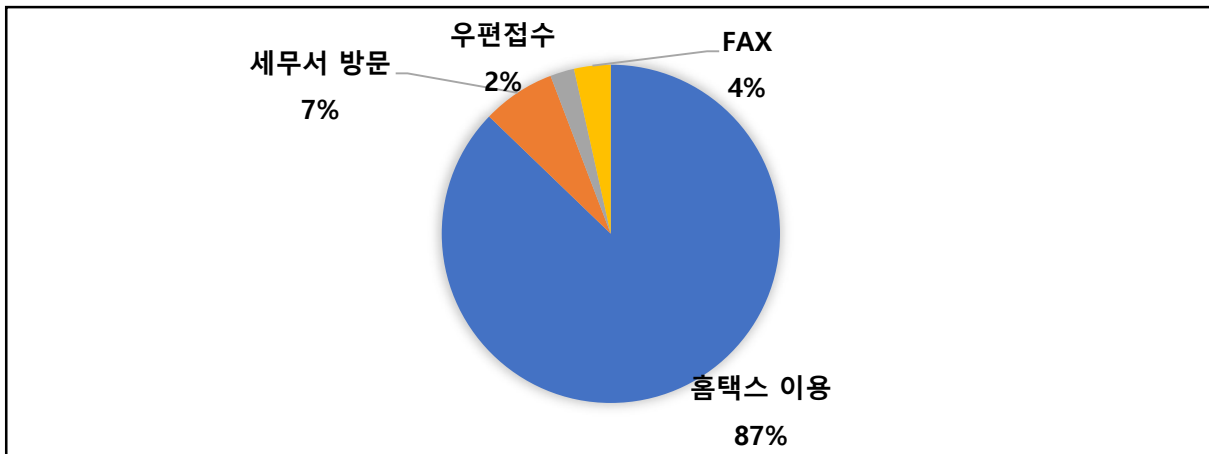
[물음] 교회에서 소득 신고를 누가 진행하셨습니다? (2020 년도 기준)

(N = 132, %)



[물음] '목회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선택하신 경우, 어떻게 신고하셨습니다?

(N = 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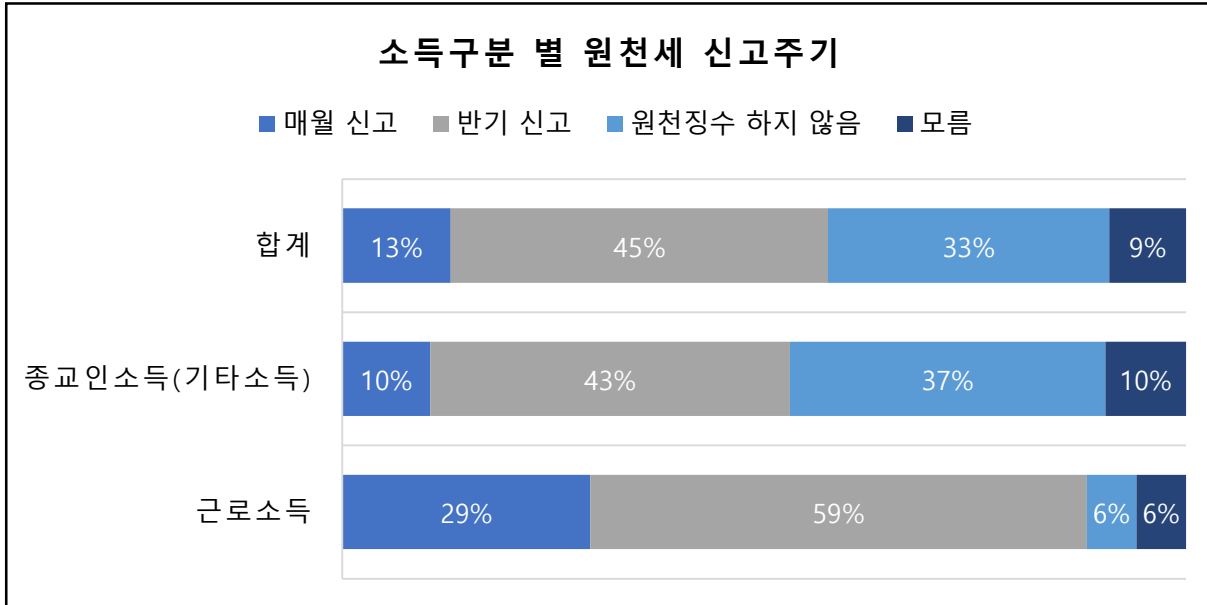


설문 결과, 65% 응답자(목회자)가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직접 신고한 목회자의 경우 대다수(87%)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선택한 신고주기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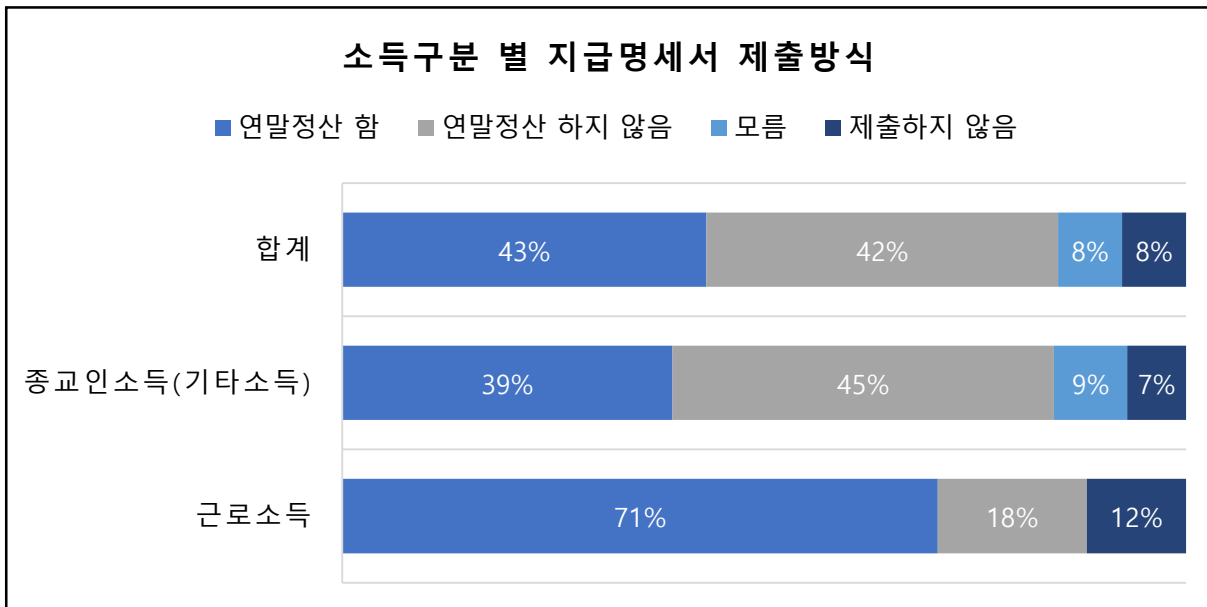
[물음] 원천세 소득 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020 년 기준)

(N = 132, %)



[물음] 지급명세서 제출 방식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020 년 기준)

(N = 132, %)



종교인소득신고 절차는 근로자의 소득세 신고와 비교할 때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상시근무 인원 수에 관계없이 원천세 반기별납부가 가능하다. (소령§186)
- ②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소법§155 의 6)
- ③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소법§164)

설문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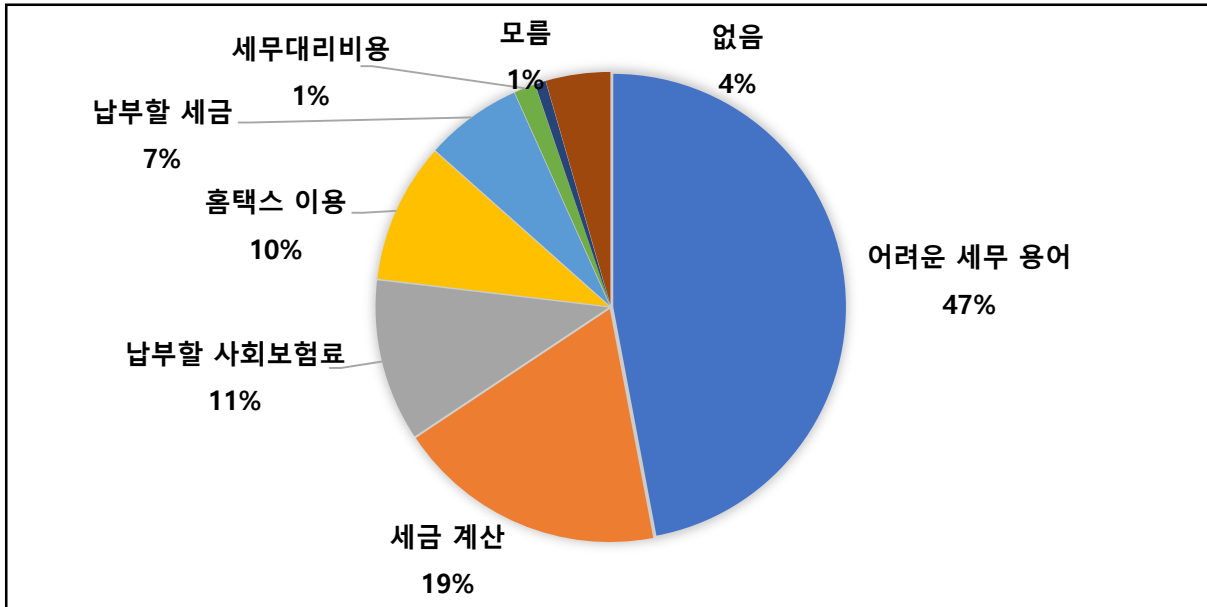
- ① 원천세 신고와 관련하여, 반기 신고제도를 활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 ② 근로소득신고자보다 기타소득신고자가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 ③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가 연말정산 한 경우보다 더 많았다. 한편,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가 18%를 차지하였다.

4. 종교인소득신고 제도 실태조사

(1) 목회자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

[물음] 종교인소득 신고에 있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N = 1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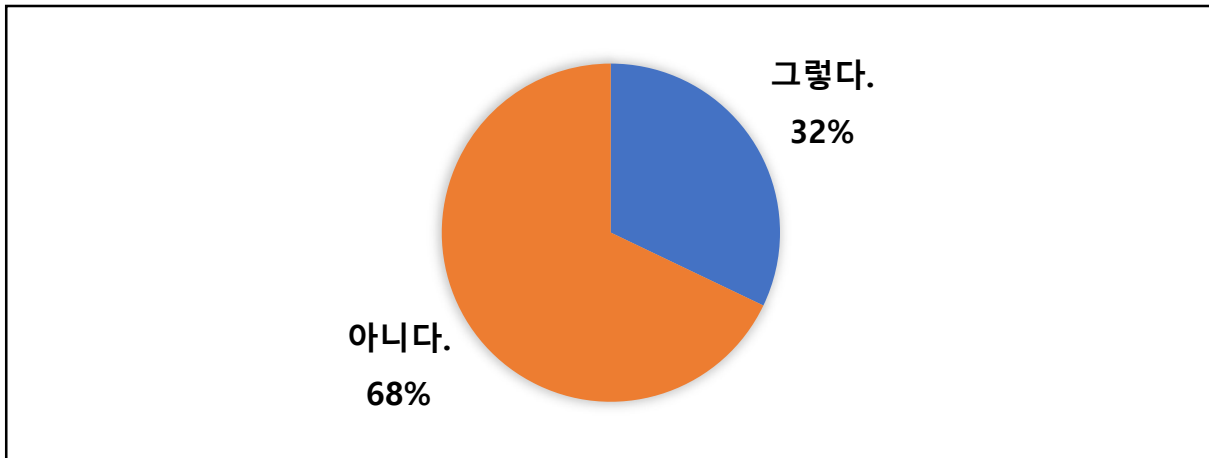
설문 결과, 어려운 세무 용어와 세금 계산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6% = 47% + 19%),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11%)이 뒤를 이었다.

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부담보다 제도를 이해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목회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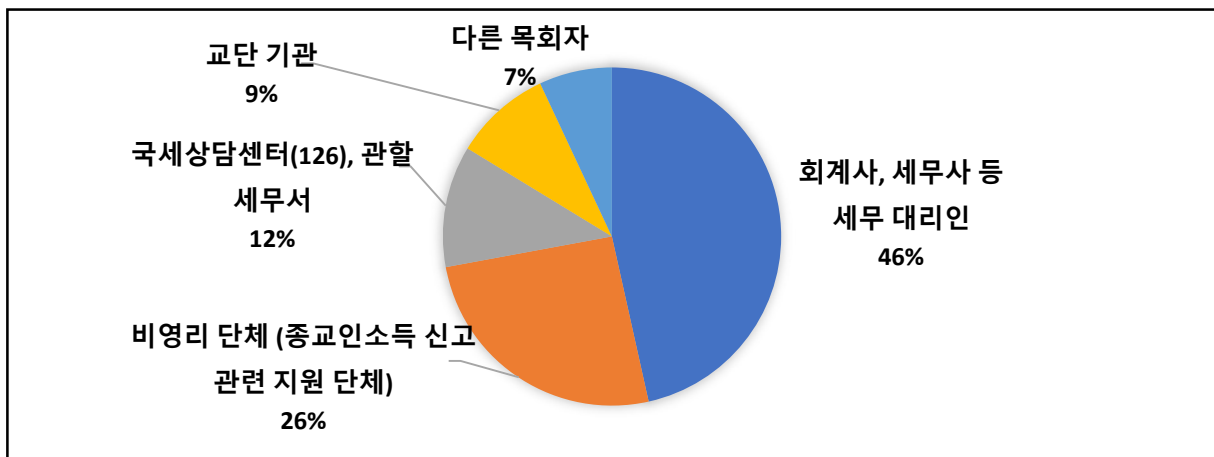
[물음]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있습니까?

(N = 134, %)



[물음] '그렇다.'고 답하신 경우, 주로 상담한 곳은 어디입니까?

(N = 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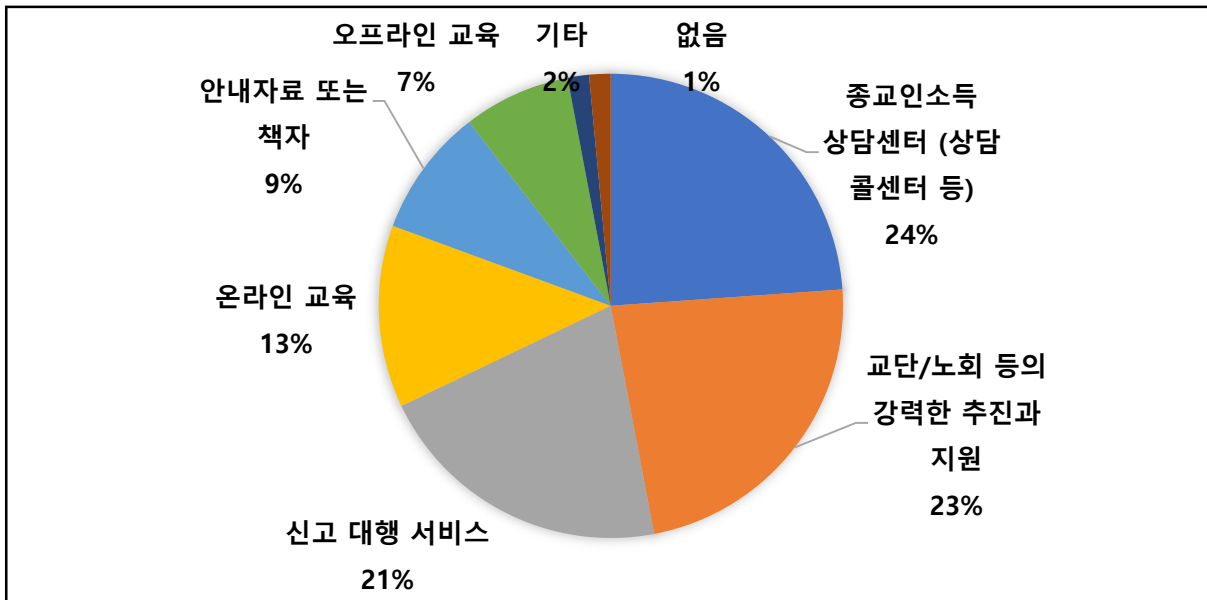
설문 결과, 과반수 이상(68%)의 목회자가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하여 문의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하여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주로 상담한 곳이 어디인지 물었을 때,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로 답한 응답자는 12%, 교단 기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로 낮은 수준에 그쳤으며 주로 세무대리인(46%)이나 비영리단체(26%) 등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목회자가 생각하는 개선 필요사항

[물음] 종교인소득 신고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N = 134, %)



설문 결과, 종교인소득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24%)과 교단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23%), 신고 대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21%)이 가장 많았고, 교육 또는 교육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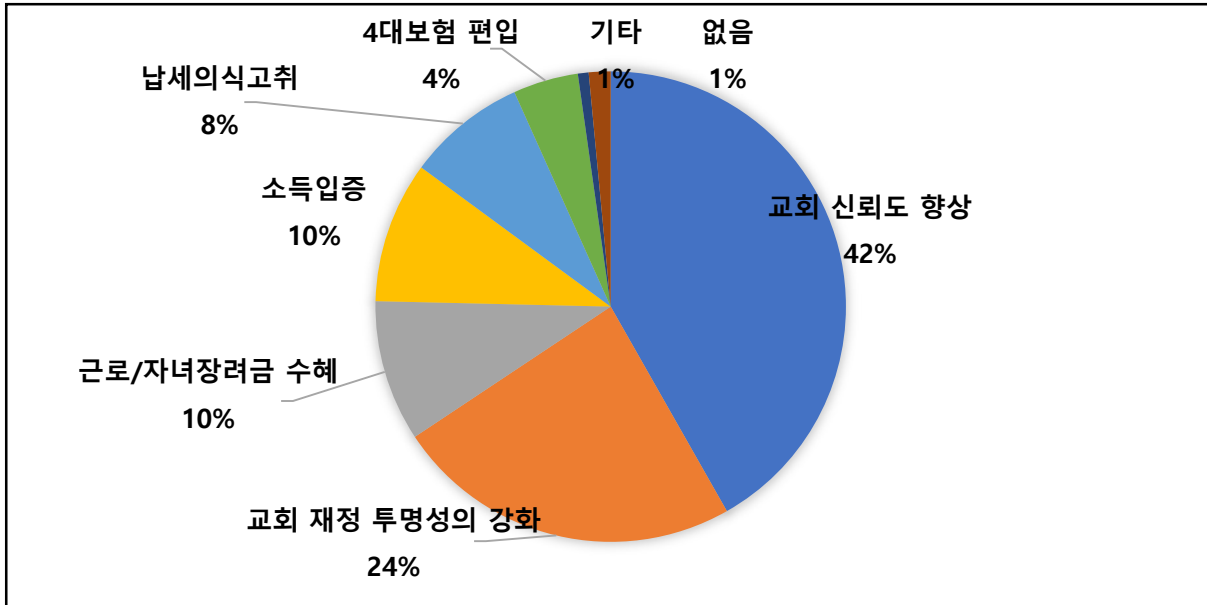
한편, 국세청에서는 매년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일부 교단에서는 무료로 종교인소득관련 온라인 교육영상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몇몇 단체에서도 종교인소득 관련하여 온·오프라인 교육 및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설문 결과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볼 때, 자료 배포자와 수급자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4) 목회자가 생각하는 종교인소득 신고의 장점과 받은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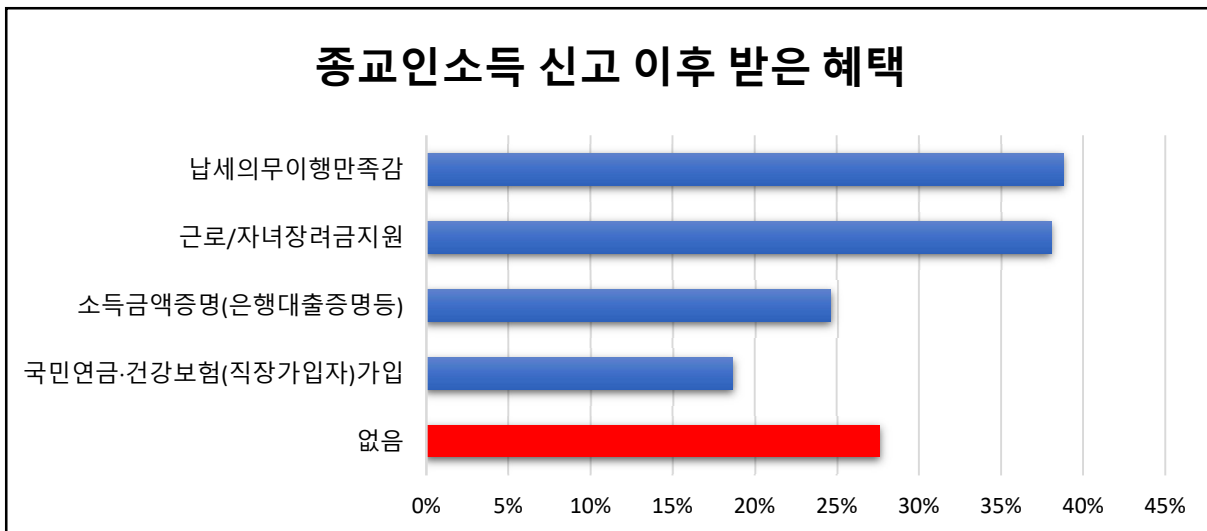
[물음] 종교인소득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 = 134, %)



[물음] 종교인소득 신고를 통하여 어떠한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복수 선택가능)

(N = 134, %)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설문에선, 응답자들은 교회 신뢰도 향상(42%)과 재정 투명성의 강화(24%) 등 비경제적인 요소가 경제적인 요소보다 더 큰 장점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종교인소득 신고 이후 실질적으로 받은 혜택에 대한 물음에서는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수 있었다.

제 3 장 설문 응답 교차 분석

1. 개요

설문 응답 교차 분석을 통해, 아래 사항에 대해 추가 분석하였다.

- 1) 종교인소득 과세의 찬반 의견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가?
- 2) 종교인소득신고 제도 관련 지식 수준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가?
- 3) '경제적인 부담과 비경제적인 부담 중 어떤 것이 더 부담되는지'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가?
- 4) '경제적인 이점과 비경제적인 이점 중 어떤 것을 더 큰 이점으로 보았는지'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가?

2. 모형 설정

(1) 변수 설명

독립변수 (X)

[물음 1 추출]	지역(Area)	비수도권 : 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1
[물음 2 추출]	연령(Age)	30 대 : 0 40 대 : 1 50 대 : 2 60 대 이상 : 3
[물음 4 추출]	목회자수(Pastor)	1 인 : 0 2~5 인 : 1 5 인 초과 : 2
[물음 5 추출]	성도수(member)	100 인 이하 : 0 100 인 초과 : 1

[물음 11 추출] 직분(Rank) 그 외 : 0
담임목사 : 1

[물음 12 추출] 사례규모(Fees) 1,200 만원 이하 : 0
1,200~2,000 만원 : 1
2,000~4,000 만원 : 2
4,000 만원 이상 : 3

종속변수 (Y)

[물음 6 추출] 종교인소득 찬반(PC) 찬성하지 않음 : 0
찬성함 : 1

[물음 15 추출] 지식(Awareness) 각 잘차, 제도 인지여부를 1 점으로 산정하여
7 점 척도화

[물음 16 추출] 부담(Burden) 비경제적인 이유 : 0
경제적인 이유 : 1

(* 비경제적인 이유 : 어려운 세무용어, 세금 계산, 홈택스 이용)

(* 경제적인 이유 : 세금 납부, 사회보험료, 세무대리비용)

[물음 19 추출] 이점(benefit) 비경제적인 이유 : 0
경제적인 이유 : 1

(* 비경제적인 이유 : 교회 신뢰도 향상, 재정투명성 강화, 목회자 납세의식 고취)

(* 경제적인 이유 :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소득입증 수월)

(2) 모형 설명

- 1) 이항로짓분석을 통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의견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한다.

$$PC = f(\text{Area, Age, Body, pastor, member, Rank, Fees})$$

- 2) 선형회기분석을 통해 지식정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text{Awareness} = f(\text{Area, Age, Body, pastor, member, Rank, Fees})$$

- 3) 이항로짓분석을 통해 부담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text{Burden} = f(\text{Area, Age, Body, pastor, member, Rank, Fees})$$

- 4) 이항로짓분석을 통해 이점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text{Benefit} = f(\text{Area, Age, Body, pastor, member, Rank, Fees})$$

(3) 모형 검증 시 사용 기법

- 후진소거법 (LR) 방식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 제거하였음
- 이항로짓분석의 경우 Wald-Test 상 유의수준 5% 또는 10% 범위내에서 해석함
- 선형회기분석의 경우 F 검정, t-Test 상 유의수준 5% 범위내에서 해석함
- 선형회기분석의 경우 VIF < 3 이면 다중공선성 문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석함 (Empirical)

3. 결과

(1) 결과 요약

- ① 유의수준 5%하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찬반의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변수는 '나이(Age)'가 유일했으며, 한 세대(10 살) 올라갈수록 이전 세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65%정도 더 과세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9 단계 기준. Odds ratio = 0.345, p-value = 0.004)
- ② 유의수준 5%하에서, 제도와 관련된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목회자수(Pastor) 5 인기준과 사례규모 1,200 만원 기준(Fees)' 이었다.
7 점 만점 척도를 기준으로,
소속 교회 목회자 수가 5 인 미만일 때, 5 인 초과일 때보다 지식 수준이 약 1.3 점 높았고,
사례규모가 1,200 만원 이하 일 때, 1,200 만원 이상 일 때보다 지식 수준이 약 0.7 점 낮았다.
(8 단계 기준. $\beta_{PASTOR_{5인초과dummy}} = -1.312 (p = 0.007)$, $\beta_{FEES_{1,200이하dummy}} = -0.746 (p = 0.056)$, $VIF = 1.049$, $F test (p = 0.011)$)
- ③ 유의수준 10%하에서, 비경제적인 부담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크게 느끼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소속교회 목회자 수' 였다.
즉, 큰 교회일수록 과세제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크다고 더 많이 응답했다.
(5 단계 기준. Odds ratio = 2.719, p-value = 0.093)
- ④ 유의수준 10%하에서, 경제적인 이점보다 비경제적인 이점이 더 크다고 느끼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나이, 소속교회 목회자 수' 였다.
즉, 나이가 많을 수록, 소속교회 목회자 수가 많을 수록 과세제도에 경제적인 이점보다 비경제적인 이점이 더 크다고 응답한 목회자가 더 많았다.
(5 단계 기준. $Odds ratio_{age} = 0.501 (p = 0.036)$, $Odds ratio_{member} = 0.271 (p = 0.088)$)

(2) 통계 상세

① 종교인소득 찬반 의견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가?

방정식의 변수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1 단계 ^a	Area	0.604	0.586	1.062	1	0.303	1.829	
	Age	-1.010	0.433	5.430	1	0.020	0.364	
	member	-0.543	0.970	0.314	1	0.575	0.581	
	Rank	0.046	1.424	0.001	1	0.974	1.047	
	Pastor=1 인	-0.801	1.424	0.317	1	0.574	0.449	
	Pastor=2~5 인	-0.132	1.254	0.011	1	0.916	0.876	
	Fees=1200 만원 이하	0.330	1.266	0.068	1	0.795	1.391	
	Fees=1200~2000 만원	1.271	1.354	0.882	1	0.348	3.566	
	Fees=2000~4000 만원	0.272	1.069	0.065	1	0.799	1.312	
	상수항	3.667	1.818	4.067	1	0.044	39.142	
2 단계 ^a	Area	0.604	0.586	1.063	1	0.303	1.830	
	Age	-1.005	0.402	6.233	1	0.013	0.366	
	member	-0.549	0.956	0.330	1	0.566	0.578	
	Pastor=1 인	-0.784	1.325	0.350	1	0.554	0.456	
	Pastor=2~5 인	-0.121	1.210	0.010	1	0.920	0.886	
	Fees=1200 만원 이하	0.316	1.189	0.070	1	0.791	1.371	
	Fees=1200~2000 만원	1.256	1.271	0.977	1	0.323	3.512	
	Fees=2000~4000 만원	0.259	0.993	0.068	1	0.795	1.295	
	상수항	3.699	1.539	5.778	1	0.016	40.399	
	3 단계 ^a	Area	0.590	0.567	1.080	1	0.299	1.803
Age		-1.016	0.389	6.820	1	0.009	0.362	
member		-0.520	0.915	0.323	1	0.570	0.595	
Pastor=1 인		-0.677	0.776	0.761	1	0.383	0.508	
Fees=1200 만원 이하		0.282	1.142	0.061	1	0.805	1.326	
Fees=1200~2000 만원		1.225	1.232	0.988	1	0.320	3.403	
Fees=2000~4000 만원		0.220	0.917	0.058	1	0.810	1.246	
상수항		3.653	1.470	6.178	1	0.013	38.581	
4 단계 ^a		Area	0.601	0.565	1.133	1	0.287	1.825
		Age	-1.033	0.381	7.354	1	0.007	0.356
	member	-0.598	0.851	0.494	1	0.482	0.550	
	Pastor=1 인	-0.669	0.775	0.745	1	0.388	0.512	
	Fees=1200 만원 이하	0.074	0.745	0.010	1	0.921	1.076	
	Fees=1200~2000 만원	1.025	0.909	1.271	1	0.260	2.786	
	상수항	3.880	1.124	11.914	1	0.001	48.438	
	5 단계 ^a	Area	0.605	0.564	1.150	1	0.284	1.831
		Age	-1.035	0.380	7.413	1	0.006	0.355
		member	-0.622	0.819	0.577	1	0.447	0.537
Pastor=1 인		-0.657	0.766	0.734	1	0.391	0.518	
Fees=1200~2000 만원		0.993	0.853	1.357	1	0.244	2.700	
상수항		3.906	1.097	12.680	1	0.000	49.676	

6 단계 ^a	Area	0.568	0.560	1.028	1	0.311	1.764
	Age	-1.048	0.384	7.435	1	0.006	0.351
	Pastor=1 인	-0.310	0.587	0.278	1	0.598	0.734
	Fees=1200~2000 만원	1.067	0.843	1.603	1	0.206	2.906
	상수항	3.555	0.987	12.986	1	0.000	34.998
7 단계 ^a	Area	0.588	0.559	1.107	1	0.293	1.801
	Age	-1.058	0.381	7.711	1	0.005	0.347
	Fees=1200~2000 만원	0.971	0.822	1.395	1	0.238	2.640
	상수항	3.387	0.920	13.538	1	0.000	29.565
8 단계 ^a	Age	-1.133	0.378	9.009	1	0.003	0.322
	Fees=1200~2000 만원	0.931	0.822	1.282	1	0.258	2.536
	상수항	3.876	0.822	22.231	1	0.000	48.235
9 단계 ^a	Age	-1.065	0.368	8.359	1	0.004	0.345
	상수항	3.893	0.814	22.850	1	0.000	49.062

a. 변수가 1: Area, Age, member, Rank, Pastor=1 인, Pastor=2~5 인,
Fees=1200 만원 이하, Fees=1200~2000 만원, Fees=2000~4000 만원 단계에 입력되었습니다.

② 종교인소득 찬반 의견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가?

ANOVA^a

모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1 회귀	54.360	9	6.040	1.771	.080 ^b
잔차	422.894	124	3.410		
전체	477.254	133			
2 회귀	53.581	8	6.698	1.976	.055 ^c
잔차	423.673	125	3.389		
전체	477.254	133			
3 회귀	50.406	7	7.201	2.126	.045 ^d
잔차	426.847	126	3.388		
전체	477.254	133			
4 회귀	45.737	6	7.623	2.243	.043 ^e
잔차	431.517	127	3.398		
전체	477.254	133			
5 회귀	43.541	5	8.708	2.570	.030 ^f
잔차	433.712	128	3.388		
전체	477.254	133			
6 회귀	42.066	4	10.516	3.117	.017 ^g
잔차	435.188	129	3.374		
전체	477.254	133			
7 회귀	38.166	3	12.722	3.767	.012 ^h
잔차	439.088	130	3.378		
전체	477.254	133			
8 회귀	31.949	2	15.974	4.699	.011 ⁱ
잔차	445.305	131	3.399		
전체	477.254	133			

a. 종속변수: Awareness

b. 예측자: (상수), fees=4000 만원 초과, pastor=2~5 인, age, fees=1200 만원 이하, area, fees=1200~2000 만원, rank, member, pastor=5 인 초과

c. 예측자: (상수), fees=4000 만원 초과, age, fees=1200 만원 이하, area, fees=1200~2000 만원,

rank, member, pastor=5 인 초과

d. 예측자: (상수), fees=4000 만원 초과, age, fees=1200 만원 이하,

fees=1200~2000 만원,

rank, member, pastor=5 인 초과

e. 예측자: (상수), fees=4000 만원 초과, age, fees=1200 만원 이하,

fees=1200~2000 만원,

rank, pastor=5 인 초과

f. 예측자: (상수), fees=4000 만원 초과, age, fees=1200 만원 이하,

fees=1200~2000 만원, pastor=5 인 초과

g. 예측자: (상수), age, fees=1200 만원 이하, fees=1200~2000 만원, pastor=5 인

초과

h. 예측자: (상수), age, fees=1200 만원 이하, pastor=5 인 초과

i. 예측자: (상수), fees=1200 만원 이하, pastor=5 인 초과

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에 대한 95.0% 신뢰구간		공선성 통계량	
	B	표준화 오류				하한	상한	공차	VIF
1 (상수)	3.380	0.763		4.429	0.000	1.869	4.890		
area	0.315	0.347	0.080	0.906	0.366	-0.372	1.001	0.919	1.088
age	0.381	0.230	0.175	1.661	0.099	-0.073	0.836	0.643	1.556
member	-0.786	0.586	-0.188	-1.342	0.182	-1.947	0.374	0.365	2.743
rank	-0.709	0.687	-0.146	-1.031	0.305	-2.069	0.652	0.355	2.817
pastor=2~5 인	0.212	0.444	0.052	0.478	0.634	-0.667	1.091	0.599	1.668
pastor=5 인 초과	-1.163	0.795	-0.210	-1.463	0.146	-2.738	0.411	0.346	2.890
fees=1200 만원 이하	-0.899	0.447	-0.201	-2.010	0.047	-1.784	0.014	0.716	1.397
fees=1200~2000 만원	-0.477	0.482	-0.097	-0.991	0.324	-1.431	0.476	0.746	1.340
fees=4000 만원 초과	0.776	0.695	0.122	1.116	0.267	-0.600	2.151	0.601	1.663
2 (상수)	3.544	0.679		5.219	0.000	2.200	4.888		
area	0.333	0.344	0.085	0.968	0.335	-0.348	1.013	0.931	1.075
age	0.385	0.229	0.177	1.684	0.095	-0.068	0.838	0.643	1.554
member	-0.735	0.575	-0.176	-1.280	0.203	-1.872	0.402	0.377	2.651
rank	-0.816	0.648	-0.168	-1.259	0.210	-2.098	0.466	0.397	2.518
pastor=5 인 초과	-1.380	0.652	-0.249	-2.115	0.036	-2.670	-0.089	0.511	1.955
fees=1200 만원 이하	-0.942	0.436	-0.211	-2.159	0.033	-1.806	-0.079	0.747	1.339
fees=1200~2000 만원	-0.527	0.469	-0.107	-1.123	0.263	-1.455	0.401	0.782	1.278
fees=4000 만원 초과	0.830	0.684	0.130	1.214	0.227	-0.523	2.183	0.618	1.619
3 (상수)	3.811	0.621		6.141	0.000	2.583	5.039		
age	0.352	0.226	0.162	1.556	0.122	-0.096	0.799	0.658	1.519
member	-0.670	0.570	-0.160	-1.174	0.243	-1.798	0.459	0.383	2.614
rank	-0.814	0.648	-0.168	-1.257	0.211	-2.096	0.467	0.397	2.518
pastor=5 인 초과	-1.471	0.645	-0.266	-2.280	0.024	-2.747	-0.194	0.522	1.914
fees=1200 만원 이하	-0.954	0.436	-0.213	-2.186	0.031	-1.817	0.090	0.747	1.338
fees=1200~2000 만원	-0.556	0.468	-0.113	-1.189	0.237	-1.482	0.370	0.786	1.273

fees=4000 만원 초과	0.827	0.683	0.130	1.210	0.229	- 0.526	2.179	0.61 8	1.61 9
4 (상수)	3.367	0.493		6.828	0.000	2.391	4.343		
age	0.325	0.225	0.149	1.443	0.152	- 0.121	0.771	0.66 5	1.50 4
rank	- 0.462	0.575	-0.095	- 0.804	0.423	- 1.600	0.675	0.50 6	1.97 8
pastor=5 인 초과	- 1.674	0.622	-0.302	- 2.689	0.008	- 2.905	- 0.442	0.56 3	1.77 7
fees=1200 만원 이하	- 0.786	0.413	-0.176	- 1.904	0.059	- 1.603	0.031	0.83 7	1.19 5
fees=1200~2000 만원	- 0.414	0.453	-0.084	- 0.915	0.362	- 1.310	0.481	0.84 2	1.18 8
fees=4000 만원 초과	0.541	0.640	0.085	0.846	0.399	- 0.724	1.807	0.70 7	1.41 4
5 (상수)	3.120	0.385		8.104	0.000	2.358	3.882		
age	0.237	0.197	0.109	1.206	0.230	- 0.152	0.626	0.87 0	1.15 0
pastor=5 인 초과	- 1.431	0.543	-0.258	- 2.633	0.010	- 2.506	- 0.355	0.73 7	1.35 8
fees=1200 만원 이하	- 0.817	0.410	-0.183	- 1.992	0.048	- 1.629	- 0.005	0.84 5	1.18 4
fees=1200~2000 만원	- 0.430	0.452	-0.087	- 0.952	0.343	- 1.323	0.464	0.84 3	1.18 6
fees=4000 만원 초과	0.407	0.617	0.064	0.660	0.511	- 0.813	1.627	0.75 9	1.31 7
6 (상수)	3.101	0.383		8.095	0.000	2.343	3.859		
age	0.274	0.188	0.126	1.454	0.148	- 0.099	0.646	0.94 5	1.05 8
pastor=5 인 초과	- 1.294	0.501	-0.234	- 2.581	0.011	- 2.286	- 0.302	0.86 1	1.16 1
fees=1200 만원 이하	- 0.856	0.405	-0.191	- 2.114	0.036	- 1.658	- 0.055	0.86 2	1.15 9
fees=1200~2000 만원	- 0.478	0.445	-0.097	- 1.075	0.284	- 1.358	0.402	0.86 6	1.15 5
7 (상수)	2.999	0.371		8.077	0.000	2.264	3.733		
age	0.254	0.187	0.117	1.357	0.177	- 0.117	0.625	0.95 4	1.04 8
pastor=5 인 초과	- 1.170	0.488	-0.211	- 2.397	0.018	- 2.136	- 0.204	0.90 9	1.10 0
fees=1200 만원 이하	- 0.723	0.386	-0.162	- 1.874	0.063	- 1.487	0.040	0.95 1	1.05 1
8 (상수)	3.424	0.200		17.11 9	0.000	3.028	3.819		
pastor=5 인 초과	- 1.312	0.478	-0.237	- 2.744	0.007	- 2.259	- 0.366	0.95 3	1.04 9
fees=1200 만원 이하	- 0.746	0.387	-0.167	- 1.929	0.056	- 1.511	0.019	0.95 3	1.04 9

a. 종속변수: Awareness

③ 경제적인 부담과 비경제적인 부담 중 어떤 것이 더 부담되는지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가?

방정식의 변수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1 단계 ^a	Area	0.328	0.496	0.437	1	0.509	1.388
	Age	0.409	0.330	1.538	1	0.215	1.505
	Pastor	0.281	0.505	0.308	1	0.579	1.324
	member	0.905	0.784	1.331	1	0.249	2.471
	Rank	-0.064	0.862	0.006	1	0.941	0.938
	fees	-0.521	0.325	2.568	1	0.109	0.594
	상수항	-1.912	0.871	4.819	1	0.028	0.148
2 단계 ^a	Area	0.327	0.496	0.434	1	0.510	1.387
	Age	0.396	0.280	1.996	1	0.158	1.486
	Pastor	0.295	0.467	0.399	1	0.527	1.343
	member	0.921	0.754	1.491	1	0.222	2.511
	fees	-0.528	0.311	2.890	1	0.089	0.590
	상수항	-1.945	0.749	6.743	1	0.009	0.143
3 단계 ^a	Area	0.295	0.493	0.359	1	0.549	1.343
	Age	0.347	0.267	1.680	1	0.195	1.414
	member	1.178	0.634	3.452	1	0.063	3.249
	fees	-0.482	0.301	2.571	1	0.109	0.617
	상수항	-1.807	0.709	6.492	1	0.011	0.164
4 단계 ^a	Age	0.320	0.262	1.483	1	0.223	1.377
	member	1.212	0.634	3.656	1	0.056	3.361
	fees	-0.487	0.301	2.611	1	0.106	0.614
	상수항	-1.573	0.582	7.309	1	0.007	0.207
5 단계 ^a	member	1.000	0.595	2.823	1	0.093	2.719
	fees	-0.431	0.294	2.141	1	0.143	0.650
	상수항	-1.066	0.394	7.325	1	0.007	0.345
6 단계 ^a	member	0.488	0.460	1.125	1	0.289	1.629
	상수항	-1.518	0.276	30.236	1	0.000	0.219
7 단계 ^a	상수항	-1.357	0.220	38.077	1	0.000	0.257

a. 변수가 1: Area, Age, Pastor, member, Rank, fees 단계에 입력되었습니다.

④ 경제적인 이점과 비경제적인 이점 중 어떤 것이 더 장점이라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가?

방정식의 변수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1 단계 ^a	area	0.450	0.487	0.856	1	0.355	1.569
	age	-0.651	0.312	4.369	1	0.037	0.521
	pastor	-0.131	0.492	0.070	1	0.791	0.878
	member	-1.275	0.828	2.370	1	0.124	0.279
	rank	-1.046	0.887	1.392	1	0.238	0.351
	fees	0.351	0.292	1.444	1	0.229	1.421
	상수항	0.207	0.873	0.056	1	0.813	1.230
2 단계 ^a	area	0.438	0.484	0.820	1	0.365	1.550
	age	-0.654	0.312	4.394	1	0.036	0.520
	member	-1.344	0.787	2.917	1	0.088	0.261
	rank	-0.949	0.804	1.392	1	0.238	0.387
	fees	0.331	0.282	1.377	1	0.241	1.392
	상수항	0.116	0.801	0.021	1	0.884	1.124
3 단계 ^a	age	-0.692	0.307	5.080	1	0.024	0.501
	member	-1.305	0.782	2.784	1	0.095	0.271
	rank	-0.921	0.799	1.329	1	0.249	0.398
	fees	0.344	0.282	1.489	1	0.222	1.411
	상수항	0.418	0.723	0.334	1	0.563	1.519
4 단계 ^a	age	-0.864	0.272	10.116	1	0.001	0.422
	member	-0.737	0.570	1.672	1	0.196	0.478
	fees	0.270	0.271	0.995	1	0.319	1.310
	상수항	-0.095	0.542	0.031	1	0.860	0.909
5 단계 ^a	age	-0.834	0.269	9.578	1	0.002	0.434
	member	-0.450	0.498	0.819	1	0.366	0.638
	상수항	0.180	0.466	0.150	1	0.698	1.198
6 단계 ^a	age	-0.763	0.253	9.115	1	0.003	0.466
	상수항	-0.045	0.392	0.013	1	0.909	0.956

a. 변수가 1: area, age, pastor, member, rank, fees 단계에 입력되었습니다.

제 4 장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교회재정건강성운동입니다.

저희는 지금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26 호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처리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자님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년 6 월)

1. 거주지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13) 전북 | 14) 전남 |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 | | |

2. 연령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
| 1) 20 대 | 2) 30 대 | 3) 40 대 | 4) 50 대 | 5) 60 대 이상 |
|---------|---------|---------|---------|------------|

3. 소속교단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
| 1) 감리교 | 2) 성결교 | 3) 장로교(통합) | 4) 장로교(합동) | 5) 장로교(그 외) |
| 6) 침례교 | 7) 이외 교단 | | | |

4. 교회 소속 목회자 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원로목사, 협동목사, 파트타임 전도사 등 포함)

- | | | | | |
|--------|----------|----------|------------|------------|
| 1) 1 인 | 2) 2~3 인 | 3) 4~5 인 | 4) 6~ 10 인 | 5) 10 인 초과 |
|--------|----------|----------|------------|------------|

5. 교회 규모 (주일 예배 참석 성도 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100 명 이하
- 2) 100 ~ 300 명 이하
- 3) 300 ~ 500 명 이하
- 4) 500 ~ 1,000 명 이하
- 5) 1,000 명 초과

6. 종교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찬성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찬성한다.
- 2) 반대한다.
- 3) 관심 없음

7. 교회에서 소득 신고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1) 2018 년 이전 (소득세법 개정 전)
- 2) 2018~ 2019 년
- 3) 2020 년
- 4) 신고한 적 없음

8. 교회에서 소득 신고를 누가 진행하셨습니까? (2020 년도 기준)

- 1) 목회자 본인
- 2) 교회 내 행정직원 / 재정부
- 3) 비영리 단체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 지원 단체)
- 4)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 서비스 이용)
- 5) 기타 _____ (예, 교단총회 등의 지원)

8-1. 8 번 문항에서 ‘목회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선택하신 경우, 어떻게 신고하셨습니까?

- 1) 홈택스 이용
- 2) 우편접수
- 3) 세무서 방문

9. 원천세 소득 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020 년 기준)

- 1) 매월 신고 2) 반기 신고 3) 원천징수 하지 않음 4) 모름

10. 지급명세서 제출 방식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020 년 기준)

- 1) 연말정산 함 2) 연말정산 하지 않음 3) 제출하지 않음 4) 모름

11. 교회 내 직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1) 담임목사 | 2) 부목사 | 3) 부서목사 |
| 4) 원로목사 | 5) 협동목사 | 6) 전임전도사, 강도사 |
| 7) 파트타임전도사 | 8) 기타 (_____) | |

12. 연간 사례비 구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원천징수 하기 전 금액)

- 1) 1,200 만원 이하
- 2) 1,200 ~ 2,000 만원 이하
- 3) 2,000 ~ 4,000 만원 이하
- 4) 4,000 ~ 6,000 만원 이하
- 5) 6,000 만원 초과

13. 사례비를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하셨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근로소득 2) 종교인소득(기타소득) 3) 신고하지 않음 4) 모름

14. 사례비 외 다른 소득 여부에 관하여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 1) 없음
- 2) 비영리단체 활동 소득 (예, 아동복지센터 등)
- 3) 교회 활동 관련 소득 (예, 강연료, 원고료 등)
- 4) 교회 활동 외 소득 (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 5) 기타 (_____)

15.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 알고 계신 내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 1) 사례비 원천세 신고
- 2) 행정직원, 반주자 등 원천세 신고
- 3) 퇴직소득 신고
- 4) 반기납부승인 신청
- 5)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신청
- 6) 지급명세서 제출
- 7) 종합소득세 신고
- 8) 아는 내용 없음

16. 종교인소득 신고에 있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1) 어려운 세무 용어
- 2) 홈택스 이용
- 3) 세금 계산
- 4) 세금 납부의 부담
- 5) 교회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6) 세무대리비용
- 7) 기타 _____

17.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있습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17-1. 17 번 문항에 '그렇다.'고 답하신 경우, 주로 상담한 곳은 어디입니까?

- 1) 국세상담센터(126), 관할 세무서
- 2) 교단 기관
- 3) 비영리 단체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 지원 단체)
- 4)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
- 5) 다른 목회자
- 6) 기타 (_____)

18. 종교인소득 신고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목회자 대상 오프라인 교육
- 2) 목회자 대상 온라인 교육
- 3) 안내자료 또는 책자
- 4) 종교인소득 상담센터 (상담 콜센터 등)
- 5) 신고 대행 서비스
- 6) 교단/노회 등의 강력한 추진과 지원

7) 우수 신고자 포상이나 사례 홍보

8) 기타 _____

19. 종교인소득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교회 재정 투명성의 강화

2) 교회 신뢰도 향상

3) 목회자 납세의식 고취

4)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5)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편입

6) 소득입증자료 발생 (대출, 국가장학금 등에 활용)

7) 기타 _____

20. 종교인소득 신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어떠한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복수 선택가능)

1)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2) 국민연금·건강보험(직장가입자) 가입

3) 소득금액 증명 (은행대출 증명 등)

4) 납세의무이행 만족감

5) 기타 _____

6) 없음

-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개선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세요.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

(2021/08/23)

공인회계사 최호윤
(ngo114@gmail.com)

1

I. 설문 사례로 본 개선사항

2

2

1

I. 설문사례로 본 개선사항



➤ 01: 소득세제 이해 부족

- ✓ 반주자 등 비종교인 소득세 과세제도 이해 부족(17.2%)
- ✓ 퇴직소득세 이해 부족 (19.4%)
- ✓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음.
 - 종교인소득: 10%
 - 근로소득: 6%

➔ 원천징수 절차에 대한 지속적 교육 필요

- ✓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7%)

➔ 방문 접수? or 방문 상담 접수?

➔ 수작업 신고서 작성 어려움을 고려하면 **홈택스 신고 절차 교육과 홍보가 보강될 필요.**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2021.08.23)

3

3

I. 설문사례로 본 개선사항



➤ 02: 편리한 상담기구 부족

- ✓ 편리하게 상담할 곳 없다(68%)
- ✓ 상담한 경우 상담한 곳으로
 - 국세상담센터(12%), 교단(9%) 보다는
 - 세무대리인(46%), 지원단체(26%) 의존도 높음:

➔ 규모가 있고 재정 여유가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작고, 재정 여유가 없는 경우 세무대리 비용 지불이 부담이 된다.

종교인소득세 신고절차가 원활 하려면
대형교회 중심이 아니라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규모 교회 목회자들이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2021.08.23)

4

4

2

I. 설문사례로 본 개선사항



➤ 02: 편리한 상담기구 부족 [국세청 안내자료]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 법인신고안내 -
- 법인세
- 공익법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 연말정산
- 종교인소득
-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 종교인소득 신고
- 종교단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주요서식
- 참고자료실
- 세금납부 안내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 **종교인소득이란?**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

☑ **과세대상 소득은?**

-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2021.08.23)

5

I. 설문사례로 본 개선사항



➤ 02: 편리한 상담기구 부족 [국세청 안내자료]

- 부가가치세
- 원천세
- 연말정산
- 종교인소득
-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 종교인소득 신고
- 종교단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주요서식
- 참고자료실
- 세금납부 안내

전제17 건

번호	내용
17	2021년 종교인소득 신고안내(책자)
16	2020년 귀속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15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해설책자(2020년)
14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수동)
13	종교인소득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12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해설책자(2019년)
11	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10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9	종교인소득 신고 일정표
8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

← 국세청의 지속적 자료 제공과 상담콜센터(126)운영에 비해 목회자들의 정보 욕구 충족은 낮다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2021.08.23)

6

I. 설문사례로 본 개선사항



➤ 02: 편리한 상담기구 부족 [교단 안내 현황(홈페이지 중심)]

교단 구분	일시	내용	방식
예장 (통합)	2017-12-26	(강의)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교회 세무관련 실무 교육	동영상교육
	2018-09-20	2018 종교단체 직원 반기별 원천징수 신고 교육	동영상교육
	2019-05-14	2018연도 귀속분 종교인소득 신고납부교육	동영상교육
	2020-02-06	2020년 종교인소득세 및 4대보험 실무교육	동영상교육
	2021-04-26	2021년 종교인소득세 신고 실무교육	동영상교육
	2021-05-04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 장려금' 안내의 건	공지사항
예장 (합동)		총회 단위 홈페이지 안내 자료 없음	
		일부 노회 단위 개별 안내자료 있음	
예장 (합신)	2017-12-28	종교인 소득신고 관련 자료	자료실
	2021-05-04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자녀장려금' 안내의 건_한교총	공지사항
기장	2019-04-08	종교인납세 관련 교회 협조 요청의 건	공지사항
	2017-11-27	종교인 납세(과세) 교회에서 준비하기	자료실
기감	2017-12-12	종교인과세에 따른 교회세무회계실무	자료실
	2019-01-31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사항
	2021-03-05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제출 가이드	공지사항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2021.08.23)

7

7

I. 설문사례로 본 개선사항



➤ 02: 편리한 상담기구 부족 [교단 안내 현황(홈페이지 중심)]

교단 구분	일시	내용	방식
기성	2017-12-12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에 관련되어 말씀드립니다.	공지사항
	2018-01-26	종교인과세 시행 및 종교인과세 메뉴얼 다운로드 안내	자료
	2018-05-11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자료
예성	2017-12-11	종교인 소득과세 세미나	세미나
	2017-12-29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자료
	2018-06-20	종교인 과세와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공지사항
	2019-01-31	종교인 과세 관련 실무 요약	자료
	2019-02-26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2019.2.25)	자료
	2019-05-09	5월 종교인 종합소득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공지사항
	2021-03-04	종교인과세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사항/자료
	2021-05-14	5월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 및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공지사항
	기침	2020-12-10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홍보에 대한 협조 요청
2021-05-07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 자녀 장려금' 안내	공지사항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2021.08.23)

8

8

4

I. 설문사례로 본 개선사항



➤ 02: 편리한 상담기구 부족 [교단 안내 현황(홈페이지 중심)]

- '통합'의 동영상과 자료집, '예성'의 자료집을 제외하면 단순한 안내 공지 차원 임
- 목회자 종교인소득세 상담 전담 센터 부재
- ❖ 단순한 공지사항 전달만으로는 해결에 직접적 도움이 안됨
- ❖ 일방향 강의 내용 전달 또는 자료집 제공만으로는 목회자들의 의문사항 해결이 쉽지 않음
- ❖ 기장, 기감, 기성, 예성 안내자료 건별 4천회 이상 조회수
➔ 목회자들의 관심도가 높음

➔ 교단차원의 보다 더 적극적인 쌍방향 안내가 필요함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2021.08.23)

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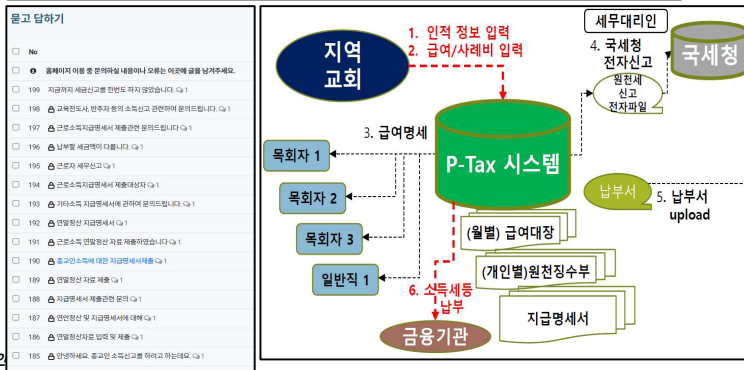
I. 설문사례로 본 개선사항



➤ 02: 편리한 상담기구 부족 [지원단체 도움]

- 교회재정건강성운동(www.ptax.kr)
 - ✓ 교육과 자료집 배포
 - ✓ 상시 상담센터(전화, On-line) 운영
 - ✓ 종교인 소득세 신고(회계법인 세무대리)

- 한국교회법학회
 - ✓ 교육과 자료집 배포
 - ✓ 상담센터(세무법인연계)



종교인

10

10

5



II. 제도적 개선사항

● 01: 구분기장/장부작성(?)

관련 규정(소령 §41조 제16항)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 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

2021년 종교인소득안내(국세청)

05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구분기장이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것

종교단체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분 기장한 경우,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시 종교 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서류는 조사대상이 아님

- ✓ 소득세법상 '**구분기장**'은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며(소법 §161), 공통손익 구분 계산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소령 §209).
- ✓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도의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법법 §113 ①).
- ➔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구분하여 기록·관리'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국세청 안내책자에서 회계단위를 구분경리하는 개념으로 구분기장을 설명하고 있기에 교회의 일반회계와 구분된 별도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2021.08.23)

12

II. 제도적 개선사항



● 01: 구분기장/장부작성(?)

- ① 소득세법상 '구분기장' 과 법인세법상 회계단위를 구분하는 '구분경리'는 각 회계단위별 수입과 지출이 각각 발생할 것을 전제하고 있음에 반해 종교인소득은 지출(or 비용)만 있으므로 별도 회계 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없다.
- ②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대상을 다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4가지 항목을 회계단위로 구분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별로 계정과목을 구분하거나 사례비 항목의 세목(세부 계정과목)으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분하여 기록·관리할 수 있다.
 - a. 종교인 보수 중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것 [←과세소득]
 - b. 종교인 보수 중 종교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종교활동비) [←비과세소득]
 - c. 종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 [←근로소득]
 - d.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비 [←교회 사업비용]

→(개선) 국세청 안내 책자의 설명을 회계단위로 구분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결산서의 지출/비용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개선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2021.08.23)

13

13

II. 제도적 개선사항



● 02: 종교활동의 범위

관련 규정 소법 제21조 제26항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소법 제12조 제5호 아목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

- ✓ '종교관련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로 범위가 명시됨
 - 목사(24811): 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
 -
 - 전도사 (24892)
 -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24899): 선교사
- ✓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종교)활동'범위에 대해 그 범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용어는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를 전제한다.
 - ② 공개적으로 예배(종교의식)를 인도할 수 없는 지역의 선교사들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 ③ 선교지에서 돌아와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시무교회가 없으므로 동일한 상황이다.

→(개선) 종교활동의 범위를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포교활동을 하는 등'으로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종교활동범주에 명시 필요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2021.08.23)

14

14

Ⅱ. 제도적 개선사항



● 03: 사회보험 소속 구분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근로소득으로 신고
국민연금	원칙: 지역가입자 예외: 사업장 가입 가능	사업장 가입자
건강보험	원칙: 사업장 가입자 예외: 1인 대표자는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 ✓ 원천징수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지만 본인이 다음해 종교인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변경
- ✓ 종교인소득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신고한 후 다음해 본인이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한 경우: 지역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에 따른 정산
- ✓ 1인 대표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신고한 후 교회 소속 목회자 또는 행정직원이 추가된 경우: 지역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

➔ (개선) 종교인소득 신고자도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단일화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2021.08.23)

15

15

Ⅱ. 제도적 개선사항



● 04: 종교인소득자 교회부담 사회보험료 비과세

(비과세 근로소득) 소법 제12조 제3호 너목	(비과세 종교인소득) 소법 제12조 제5호, 소령 19조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규정 없음

- ✓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교회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없음

➔ (개선)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사용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교회 부담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2021.08.23)

16

16

Ⅱ. 제도적 개선사항



● 05: 교단 연금 교회 부담금 비과세

- ① 교단 연금은 실정법에 의한 공적부조로 분류 되지 않음.
- ② 따라서, 교단 헌법 규정에 따라 교회가 부담하는 은급금 불입액도 목회자 개인 과세소득으로 분류됨

→ (개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자체 규정으로 시행하는 연금불입금중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불입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추가

→ 상기 개선안이 시행되려면 다음 사항이 선행되어야 함.

- a. 교단연금 수혜 지급기준이 상호부조 성격으로 개선되어야 함.
- b. 교단연금 가입이 소속 목회자 의무 가입사항이 되어야 함
- c. 본인부담 교단연금불입액을 소득/세액 공제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Ⅱ. 제도적 개선사항



● 06: 담임 목회자 명의 차량의 차량유지비

- ①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등록함.
- ② 교단 소속 지역교회는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담임 목회자 주민번호로 차량 명의를 등록해야만 함.
 - a. 고유번호증을 제시하면 (실무상) 고유번호를 병기하여 개인 소유가 아님을 표시할 수 있으나
 - b.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 담임 목회자 주민번호로만 명의를 등록하는 실정임
 - c. 실질적으로 담임 목회자 개인 소유가 아님에도 개인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월2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운행비가 담임 목회자의 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문제점 발생함. 2대 이상의 경우 과세소득 범위가 더 넓어짐
 - d.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다시 교회 고유번호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차량 등록세를 추가 부담하는 문제와 보험료 할증 문제가 발생함.

→ (개선) 특정 시점 이전에 취득한 담임 목회자명의 차량중 교회 종교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담임목회자 명의 차량의 차량유지비를 과세소득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지침

II. 제도적 개선사항



● 07: 주택 제공에 따른 비과세 소득

**(관련 규정)
소칙 제9조의 2 제1항**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칙 제10조의 2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2021.08.23)

- ①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교회는 교회 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는 교회는 취득한 주택이 없으므로 임차를 하거나 임차 자금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 ②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으려면 교회 명의로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목회자 개인명의로 전월세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
- ③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사례비도 적은 상황에서 월세 일부분을 보조 받는 금액이 과세되면서 저소득 목회자의 세부담이 더 높아지는 모순 발생

→ (개선) 교회가 소득을 지급하는 목회자에게 주택임차료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분류

19

19

II. 제도적 개선사항



● 08: 다양한 신고 방식과 서로 다른 신고 서식 작성법

- ✓ 종교인소득 과세 절차에 대한 다양한 배려가 오히려 납세자의 혼돈을 가져오는 상황
 - a. 원천징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 → 원천징수신고 할 수도 있고 신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오해 → 원천징수하고 납부 안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
 - b.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하겠다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할 수 없음 → 직전 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는 제약요소가 됨
 - c. 연말정산 한 경우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양식이 서로 다름 → 각각 다른 작성 방식에 혼선 발생. 신고절차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개선)

- a. 원천징수 단계와 징수세액납부 단계를 구분한 현행 규정을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 보완 or 원천징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b. 연말정산 여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지급명세서 제출시 연말정산여부를 체크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 c.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양식을 사용하고 지급명세서 양식에 연말정산여부를 체크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2021.08.23)

20

20

10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간담회

예장통합 전)세정대책위원장

세무사 김진호 장로

가. 종교인 과세에 따른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실상

1. 용어의 이해 부족 : 납세의무자 과 원천징수의무자
수입금액 과 소득금액
종교인기타소득세 와 종합소득세
2. 납세의무자의 혼란 : 교회부담, 본인부담.
교회사업의 과세 및 신고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등제도 이해부족
3. 종교인기타소득세 와 근로소득세 택일로 인한 유, 불리 여부
4. 국세청 홈택스 가입 및 전자신고 사용 무지
5. 지급명세서 제출 시 작성 혼란
 - 원천징수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 작성 요령
 - 타소득의 지급명세서와 공통 서식에 따른 혼란
6. 4대 보험(2대보험)가입의 혼란
 - 직장가입 : 근로소득 직원, 담임목사
 - 지역가입 : 부목사, 전도사(파트 전도사 포함)

근로복지공단은 종교인의 직장가입자로 해석(직장가입 부담이 큼)
7. 국민연금 과 교단 연금의 중복에 따른 혼란과 부담

나. 종교인과세에 대한 교단 대책

1. 총회 재정부 주관 권역별 집합 교육 (5개 권역)
2. 노회별 집합 희망 교육
3. 매년 초 종교인 및 종교단체 신고 납부 안내서 발송
4. 총회 사이버 영상 교육